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산림과장)

가. 제안이유

-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 기준을 현행 자녀 3인 이상 가정에서 자녀 2인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창군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에 맞추어 관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현행 자녀 3인 이상 가정에서 자녀 2인 이상 가정으로 개정(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안 제3조제11호에서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에서 [“다자녀 가정”이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가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2.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3.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553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6. 3. 13.

제안자 : 조례특위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제11호에서 다자녀가정을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다자녀가정의 자녀 2인 이상 모두 해당 연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며,
-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막내자녀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 간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 조문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수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 제3조제11호에서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

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에서 [“다
자녀 가정”이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가족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다자녀 가정”이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가족을 말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0. (생 략)</p> <p>11. “<u>다자녀 가정</u>”이 란 <u>가족관계등록부</u> <u>상 19세 미만의 자</u> <u>녀를 3인이상 둔 가</u> <u>족구성원을 말한다.</u> <u><2015. 5. 15 신설></u></p> <p>12. (생 략)</p>	<p>제3조(정의) ----- ----- ----- ----- ---.</p> <p>1. ~ 10. (현행과 같 음)</p> <p>11. “<u>다자녀 가정</u>”이 란 <u>가족관계등록부</u> <u>상 19세 미만의 자</u> <u>녀를 2인 이상 둔</u> <u>가족구성원을 말한</u> <u>다.</u></p> <p>12.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의) ----- ----- ----- ----- ---.</p> <p>1. ~ 10. (개정안과 같음)</p> <p>11. “<u>다자녀 가정</u>”이 란 <u>18세 이하 자녀</u> <u>를 둔 다자녀가족</u> <u>을 말한다.</u></p> <p>12. (개정안과 같음)</p>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6. 03. 03.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2. 제안이유

-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 기준을 현행 자녀 3인 이상 가정에서 자녀 2인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창군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에 맞추어 관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현행 자녀 3인 이상 가정에서 자녀 2인 이상 가정으로 개정(안 제3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의 세부 징수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음.

나. 입법의 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책무를 반영하고, 이용료 감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 다가구 자녀의 정의를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2인 이상” 으로 개정하였음.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자녀 2인 이상 가정으로 완화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을 둘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자치법규 간 기준을 일치시켜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6조에 따른 시설사용요금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시 비수기 주중에 한해 객실요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자녀가정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② ~ ⑥(생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 ②(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개정 2025. 7. 1.>

[본조신설 2015. 12. 31.][제9조의7에서 이동 <2023. 6. 7.>]

□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별표 2] <개정 2023. 10. 06.>

시설사용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주차료	경차	1,500	2,000	2,000	1대/1일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2,000	3,000	3,0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3,000	4,000	4,000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4,000	5,000	5,000	
야영장		10,000	10,000	10,000	1조/1일
산림문화 휴양관	강당 184m ²	70,000	100,000	100,000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추가
숙박 시설	숲속체험관 (자작나무)	60,000	100,000	100,000	1일/1실
	숲속의 집 (산토끼, 단풍나무)	70,000	110,000	110,000	1일/1실
	숲속의 집 (태기산)	90,000	150,000	150,000	1일/1실
다목적 운동장	1시간	15,000	20,000	20,000	숙박시설 이용객은 무료

-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5:00부터 다음일 (check-out) 11:00까지로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3:30까지이며, 입장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연휴일 경우 마지막 공휴일의 전일까지)을 말한다.
- 성수기는 매년 7. 1 ~ 8. 31까지,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미만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이하 지체는 50%, 4시간 초과 지체는 1일 이용료 추가징수
- 숙박시설의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 숲속체험관(자작나무) : 4~6인(성인 4, 청소년이하 2)
 - 숲속의집(산토끼, 단풍나무, 태기산) : 4인

6.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1~3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6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및 명예군민	1.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2.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 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 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5실 이상의 단체이용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7. 침구는 4조가 기본 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시 추가요금(1조/1일 10,000원)을 징수한다.

8. 야영시설만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2
----------	-----

제출연월일 : 2026. 3.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저출산·인구감소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현행 자녀 3인 이상 가정에서 자녀 2인 이상 가정으로 완화.
- 또한,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다자녀 가구 정책에 맞추어 시행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1호 개정
 - 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현행 자녀 3인 이상 가정에서 **자녀 2인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도모함** : 안 제3조 제11호
 - 1) **(기존)**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2) **(개정)**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01. 27. ~ 2026. 0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6-175호, 산림과-1673(2026. 1. 27.)호

2) 규제심사 : 비규제[기획실-1659 (2026.01.23.)]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없음[기획실-1659 (2026.01.23.)]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할 사항 없음[가족복지과-4002 (2026.01.27.)]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3082(2026.02.19.)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3436(2026.2.25.)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전단 중 “3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0. (생략)</p> <p>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u>3인 이상</u>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p> <p>12. (생략)</p>	<p>제3조(정의) -----</p> <p>-----</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p> <p>-----</p> <p>-- <u>2인 이상</u> -----</p> <p>-----.</p> <p>12.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기(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 16.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6. 공공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비용추계서/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 주 하
연락처	(033) 330 - 2450